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665호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6. 10. 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665호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02호, 2015.12.2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5일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동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라목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라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증·보증 표시·광고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식약처가 인증·보증기관이 새롭게 생성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자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일부 수정 및 신청기관 자격 조건 명시[안 제7조제1항 신설]

- 1) 동 고시는 외국 정부 또는 보편적으로 공신력과 신뢰성을 기 인정 받은 민간 인증·보증기관이 인증 마크 등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기관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

- 2) 인증·보증기관이 새롭게 생성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 발생
- 3) 동 고시의 업무 범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인증·보증하는 표시·광고의 종류 명확화[안 제2조 신설]

- 1) 동 고시에서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 인증·보증 표시·광고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2)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인증·보증의 종류가 명시되어 아니하여 영업자 등 혼란 초래
- 3) 인증·보증하는 표시·광고의 종류를 고시에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외국 정부 인증·보증기관의 경우 심의 생략 가능[안 제8조제3항 신설]

- 1) 인증·보증기관이 외국정부인 경우 또는 외국 정부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인증·보증기관인 경우 심의하도록 규정함
- 2) 외국 정부 기관인 경우 또는 외국 정부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인증·보증기관인 경우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함
- 3) 우리나라가 인정한 인증·보증기관을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으로 인정하는 국가의 경우 심의 없이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만으로

해당 기관의 신뢰성 인정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소비안전과, 전화: 043-719-2858, 팩스: 043-719-2850, 전자우편: psyshin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 - 66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라목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른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102호, 2015.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식품등”을 “식품”으로, “인증·보증기관 지정”을 “인증·보증 표시·광고의 허용을 위하여 해당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인증·보증하는 표시·광고의 종류) 인증·보증하는 표시·광고의 종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에 관한 것으로서, 국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ISO 22000, 할랄(Halal), 코셔(Kosher), 우수제조기준(GMP), 비건(Vegan)으로 한다.

제3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약처장 소속으로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 인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신뢰성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라 인정 신청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및 인증·보증 실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사항

제4조의 제목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단 구성)"을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식약처장은 인정 신청 시 마다 5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인증·보증하는 표시·광고의 종류 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식약처장이 위촉한다.

1. 관련 정부기관 및 정부 출연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2. 관련 업계, 학계, 연구계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된 자

-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하는 등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제8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5조, 제6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인정 신청) ①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으로 신뢰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 정부
 2. 외국 정부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인증·보증기관
 3. 민간 인증·보증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지정받은 인증·보증기관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항제3호의 경우 해당하는 민간 인증·보증기관 또는 협회 등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서류
 3. 제1항제3호의 경우 인증·보증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증·보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당시 및 신청 시의 인력 및 운영기준 비교표
- ③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기관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외국 정부에서 제1항·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제1항제3호의 경우 해당 기관을 지정한 민간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제1항·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6조(중전의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식약처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제6조(중전의 제8조)제4항 후단 중 “단, 서약서를 위반한 위원의 경우”를 “이 경우 위원이 서약서를 위반하면 해당 위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를 “후단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운영”을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신청 검토) ① 식약처장은 제7조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제출 서류의 형식요건 및 기재사항 누락 등에 대하여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 검토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 기관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이 현장실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식약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식약처장이 해당 기관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인정한 인증·보증기관을 해당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⑥ 식약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완인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완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식약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적합하거나 제6항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하여 신청기관이 제출기한 내에 보완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인정이 불가함을 알려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인증·보증기관 지정기준)”을 “(인정 및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식약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또는 제8조제5항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 신뢰성 인정증서를 교부한다.

제9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약처장은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

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정번호

2. 인정일자

3. 인증·보증기관의 명칭,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4. 인증·보증하는 표시·광고 종류

③ 식약처장으로부터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표시·광고 인증·보증 기관으로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장은 신청 당시의 자격요건 등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 기관을 직접 관리·감독 하는 외국 정부 및 해당 기관을 지정한 민간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변동사항을 보고할 수 있다.

④ 식약처장은 제3항에 따라 변동사항을 보고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결정 사실을 해당 인증·보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변동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식약처장은 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을 “식품 및 축산물에 표시·광고의 허용을 위하여 해당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인증·보증 대상 기관”을 “인정 검토 대상 인증·보증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중전의 제3호서식), 제3호 서식(중전의 제2호서식), 제4호서식(중전의 제5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 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인증·보증의 종류				
신청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법				
설립 연월일				
<p>「식품위생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라목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에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p>				
구비서류				
<p>1.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p> <p>2. 제7조제1항제3호의 경우 해당하는 민간 인증·보증기관 또는 단체 등 지정절차, 지정방법,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서류</p> <p>3. 제7조제1항제3호의 경우 인증·보증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증·보증 기관으로 지정 받은 당시 및 신청 시의 인력 및 운영기준 비교표</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심의결과보고서

심의안건 :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 변경
 기타()

- 신청기관명 :

- 인증·보증의 종류 :

심의결과 :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위원장 :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증서

기관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인증·보증의 종류 :

「식품위생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라목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에 인증·보증 표시·광고의 허용을 위하여 해당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변 경 사 항	
일 자	내 용

부칙 <제2016-00호, 2016.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u></p> <p>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u>식품등</u>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른 <u>축산물</u>에 대한 <u>인증·보증기관 지정</u>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표시·광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u>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u></p> <p>제1조(목적) ----- ----- ----- <u>식품</u> ----- ----- ----- <u>인증·보증 표시·광고의 허용을 위하여 해당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u> --- ----- ----- -----.</p> <p>제2조(<u>인증·보증하는 표시·광고의 종류</u>) <u>인증·보증하는 표시·광고의 종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에 관한 것으로서, 국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ISO 22000, 할랄(Ha</u></p>

lal), 코셔(Kosher), 우수제조기준(GMP), 비건(Vegan)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인증·보증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약처장 소속으로 식품등 및 축산물에 대한 인증·보증기관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증·보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인증·보증기관의 인증·보증 종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증·보증기관의 인증·보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식약처장이 회의 시마다 제4조에 따른 후보단 중

제3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약처장 소속으로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 인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신뢰성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라 인정 신청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및 인증·보증 실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사항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식약

처장은 인정 신청 시 마다 5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인증·보증하는 표시·광고의 종류 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인증·보증 종류에 따른 관련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위원 후보단 구성) ① 식약처장은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 지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증·보증 종류별로 30명 이내의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을 구성한다.

1. 정부기관 및 정부 출연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2. 업계, 학계, 연구계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된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주관 등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4조에 따른 후보단 구성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생략)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생

중 식약처장이 위촉한다.

1. 관련 정부기관 및 정부 출연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2. 관련 업계, 학계, 연구계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된 자
-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하는 등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관계자의 의견청취) (현행과 같음)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현행

략)

② 심의회위원회의 심의는 식품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 등에 따라 식품안전정책국장 또는 농축수산물안전국장이 소집한다.

③ (생략)

④ 위원은 심의에 출석 시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서약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서약서를 위반한 위원의 경우 심의에 참여한 건에 한하여 의견을 무효처리한다.

⑤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의결정족수 미달 등 심의결과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동 신청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거친다. 이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심의 절차를 따른다.

⑥·⑦ (생략)

⑧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인증·보증기관 지정기준)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증·보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과 같음)

② 식약처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심의회를 소집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이 경우 위원이 서약서를 위반하면 해당 위원이 -----
----- .

⑤ ----- 후단에 따라 -----

----- .
----- .

⑥·⑦ (현행과 같음)

⑧ -----
심의회위원회 운영 -----
----- .

<삭제>

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법
인이어야 한다.

1. 인증·보증업무 수행에 적합
한 직원을 갖출 것

2. 별표 1의 인증·보증기관 운
영기준에 적합한 운영체계를
구축 및 유지할 것

3. 인증·보증업무의 품질을 보
장하기 위한 인증·보증방침
과 인증·보증규정, 직원의 책
임·권한 및 상호관계, 분쟁
예방 및 고객불만 처리, 고객
비밀정보 유지·보장 등에 대
한 절차서를 작성하여 유지할
것

4. 인증·보증업무를 안정적으
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
비하여 인증·보증수수료를
의뢰자에게 반납할 수 있는 재
정적 능력을 갖출 것

제10조(지정 신청) ① 인증·보증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제7조(인정 신청) ① 식품 및 축산
물에 대한 표시·광고 인증·보
증기관으로 신뢰성을 인정받고
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해
당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2. 인증·보증업무 실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별표 1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보증 업무 규정

나. 인증·보증수수료 및 그
산정에 관한 자료

3.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4. 신청기관의 조직도

5. 현재 인증·보증업무 외에 수
행하고 있는 업무의 개요를 기
재한 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
한다)

6. 인증·보증업무관련 직원 인
력 현황

의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식
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 정부

2. 외국 정부에서 직접 관리·감
독하는 인증·보증기관

3. 민간 인증·보증기관 또는 협
회 등에서 지정받은 인증·보
증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항제3호의 경우 해당하는
민간 인증·보증기관 또는 협
회 등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서류

3. 제1항제3호의 경우 인증·보
증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증
·보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당
시 및 신청 시의 인력 및 운영
기준 비교표

③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기
관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외국
정부에서 제1항·제2항에 따른

제11조(지정 검토) ① 식약처장은
인증·보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
은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제출
서류의 형식요건 및 기재사항
누락 등에 대하여 서류검토하고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약처장은 제1항의 현장실
사에 대한 현장실사 계획을 수
립하고, 현장실사 개시 3일 전까
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실사계획서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현장실사 장소 및 일정
2. 현장실사반 구성 및 업무 분
장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의 경우 해당 기
관을 지정한 민간기관 또는 협
회 등에서 제1항·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신청 검토) ① 식약처장은
제7조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
청서 또는 제출 서류의 형식요
건 및 기재사항 누락 등에 대하
여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
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서
류 검토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
면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
원이 현장실사에 참여할 수 있
다.

3. 현장실사에 따른 협조사항

③ 식약처장은 인증·보증기관의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결과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인증·보증기관 지정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이 제9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식약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완인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완 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식약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식약처장이 해당 기관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인정한 인증·보증기관을 해당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⑥ 식약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적합 또는 제5항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하여 신청기관이 제출기한 내에 보완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지정이 불가함을 알려야 한다.

⑥ 식약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완인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완 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식약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적합하거나 제6항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하여 신청기관이 제출기한 내에 보완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인정이 불가함을 알려야 한다.

제12조(지정 및 공고) ① 식약처장은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결과 및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제9조의 인증·보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보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식약처장은 인증·보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

제9조(인정 및 공고) ① 식약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또는 제8조제5항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 신뢰성 인정증서를 교부한다.

② 식약처장은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을 인정한 경우에

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2. 지정일자

3. 인증·보증기관의 명칭, 대표
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4. 인증·보증 종류

제13조(인증·보증기관의 인증·
보증 현황 보고) 인증·보증기
관의 장은 인증·보증 의뢰를
받아 인증·보증을 하였을 때에
는 반기별로 그 사실을 식약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
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고하
여야 한다.

1. 인정번호

2. 인정일자

3. 인증·보증기관의 명칭, 대표
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4. 인증·보증하는 표시·광고 종
류

③ 식약처장으로부터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표시·광고 인증
·보증기관으로 신뢰성을 인정
받은 기관의 장은 신청 당시의
자격요건 등에 변동사항이 발생
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식약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만,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 기관을 직접 관리·감독하
는 외국 정부 및 해당 기관을 지
정한 민간기관 또는 협회 등에
서 변동사항을 보고할 수 있다.

④ 식약처장은 제3항에 따라 변
동사항을 보고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표시·광고 인증·

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결정 사실을 해당 인증·보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변동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식약처장은 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

제14조 (생략)

제10조 (현행 제14조와 같음)